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21-59

제출년월일 : 2021. 05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(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)의 규정에 따라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 : 마포복지재단

나. 관련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
다. 출연 필요성

○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 출연 지원

○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모금·배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

라. 출연금액 및 내용

○ 출연금액 : 2,106,235천원

○ 출연내용 : 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 지원

- 기본재산 : 2,000,000천원
- 보통재산 : 106,235천원

· 인건비 51,651천원, 운영비 38,084천원, 사업비 16,500천원

【 출연금 내역 】

(단위: 천원)

구분		예산액	세부내용	비고
합계		2,106,235		
복지재단 기본재산		2,000,000	• 기본재산 적립	
복지재단 운영		106,235		
	인건비	51,651	• 기본급여, 제수당 등	
	운영비	38,084	• 사회보험료, 급식비, 수도광열비, 도서인쇄비, 회의운영비, 소모품비, 자산취득비 등	
	사업비	16,500	• 복지재단 홍보 및 나눔활성화 사업, 네트워크 구축 사업	

※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21년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결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)

참고자료

□ 관계 법령

○ **민법**

○ **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

○ **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○ **지방재정법**

붙 임	관계 법령

□ 「민법」 제32조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奬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

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의 출연금

2. 그 밖의 수입금

②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의 출연금

2.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3. 법인·단체, 개인의 기부금품

4. 그 밖의 수입금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